

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

의안 번호	19-27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2019. 3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,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취득대상 : 2건
 - 실내체육관 대체신축
 - 토목과 제설제 창고 대체신축

3. 관련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
 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전 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 -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.
 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 - 가. 취득의 경우 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 - 나. 처분의 경우 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 -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- 가. 취득의 경우 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 - 나. 처분의 경우 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
 -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(취득1) 실내체육관 대체신축

【 토 목 과 】

1. 사업의 목적 및 용도

실내 체육관 건립은 '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'로 인해 철거되는 실내 배드민턴장 대체시설로, 대체시설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으며, 기존 시설 철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상실감 등을 감안하고 구민의 복리 및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배드민턴장 규모에 준하는 수준으로 추진하고자 함.

2. 구유재산 취득현황

건물명	소재지	규모	건축면적	연면적	용도	비고
실내체육관	망원동 460-5 등 2필지	지상2층	759㎡	996㎡	체육관	대체신축

3. 실내체육관 대체신축 계획

○ 신축개요(안)

- 위치 : 망원동 460-5 등 2필지(시·국유지)
- 건축면적 : 759㎡ / 연면적 996㎡
- 건설규모 : 지상2층

구분		배치(안)	비고
연면적	996㎡	건폐율 24.54%, 용적율 45.37%	
1층	759	코트 5면, 사무실, 남녀 화장실	
2층	164	탈의실, 샤워실, 휴게공간	
옥상층	73	저수조, 기계실, 배전반실	

○ 사업의 기간 : 2019. 3. ~ 2019. 12.

○ 총사업비 : 2,604백만원(공사비 2,500, 설계비 104)

4. 자원별 예산계획 및 확보방안

○ 소요예산 : 2,604백만원(구비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산 출 기 초	계
총 계		공사비 + 용역비	2,604
공 사 비		996㎡ × 2,510천원/㎡	2,500
용역비	실시설계	25억원 × 3.21% × 1.3	104

○ 예산확보 방안

- 2019년 추가경정예산(안) 구의회 상정 및 승인(2,500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)
- 용역비 104백만원 기예산 확보

5. 추진근거

- 주차장법 제21조2(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)
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)
-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1항1호(공영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비)
- 구청장방침 : 도로확장 및 주차장건설 추진계획(2015.02.06)
- 구청장방침 : 공사 저축시설 이전 및 실내체육관 건립계획(2019.2.18)

6. 향후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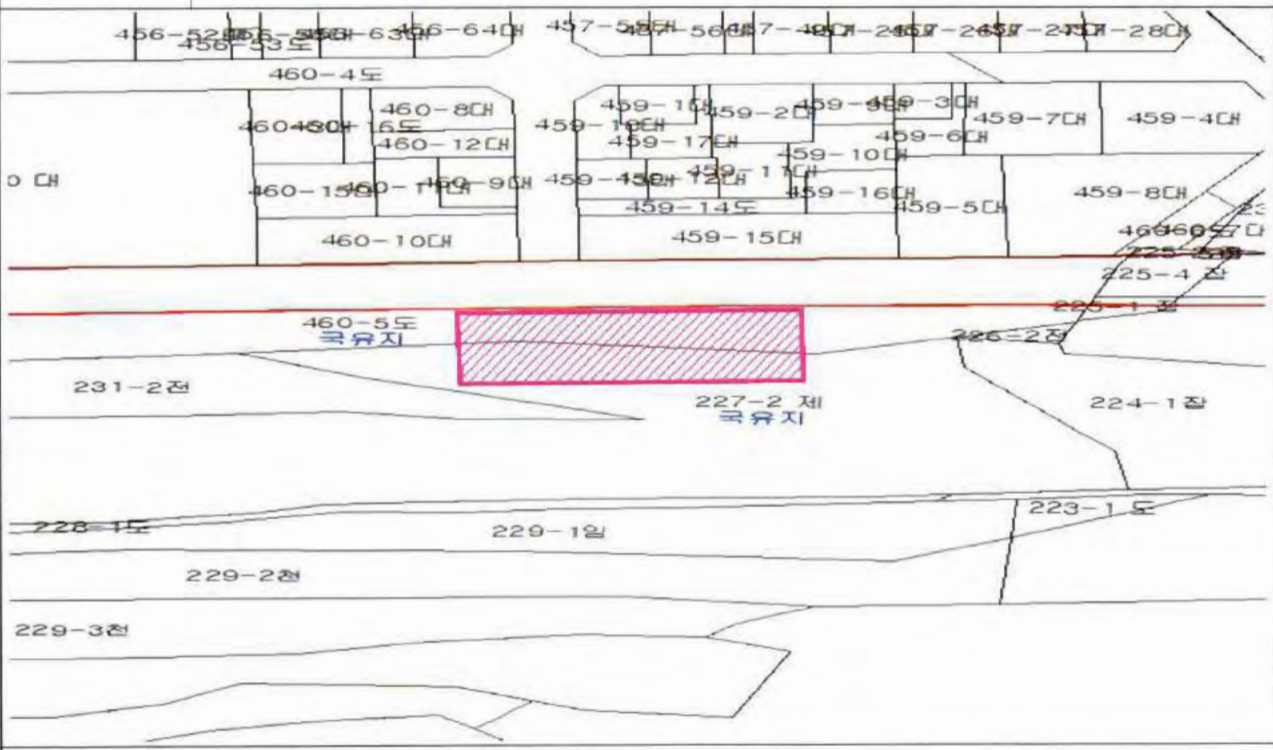
- 2019. 4. : 기본 및 실시설계
- 2019. 6. : 추가경정예산(안) 구의회 상정
- 2019. 7. : 추가경정예산(안) 구의회 승인
- 2019. 7.~ 12. : 발주 및 준공

붙 임 :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

위 치 도



위치도 설명 실내체육관 : 망원동 공영주차장과 인접하며 동교로1길로 접근용이



실내체육관 : 망원동 460-5 등 2필지

실내체육관 신축 현장사진



사진설명

실내체육관 신축 부지 항공사진



사진설명

실내체육관 신축 부지 전경

(취득2) 토목과 제설제 창고 대체신축

【 토 목 과 】

1. 사업의 목적 및 용도

- 토목과는 그간 제설자재 보관 창고가 없어 교량하부, 치수와 펌프장 등에 분산 보관하면서 여름철 습기와 기후로 인하여 변질 등 보관에 애로가 많았으며, 약 1톤에 달하는 염화칼슘 상하차시 작업자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제설을 위한 차량 상차 시 현재 백호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작업능률이 떨어졌음.
- 이에 제설자재 보관의 안정성 도모와, 무거운 물건을 안전하게 상하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제설자재 상·하차 용이, 작업자의 안전, 작업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 제설자재 창고 건립은 토목과의 숙원 사업임. 참고로 현재의 토목과 창고는 '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'로 인해 철거되는 환경미화원대기실, 불법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 보관 창고를 이전(리모델링 및 일부확장)하여 사용

2. 구유재산 취득현황

건물명	소재지	규모	건축면적	연면적	용도	비고
토목과 제설제 창고	망원동 450-3 등 9필지	지상2층	628㎡	879㎡	제설제 창고	대체신축

3. 토목과 제설제 창고 대체신축 계획

- 신축개요(안)
 - 위치 : 망원동 450-3 등 9필지(구·시·국유지)
 - 건축면적 : 628㎡ / 연면적 879㎡
 - 건설규모 : 지상2층

구분		배치(안)	비고
연면적	879㎡	건폐율 6.64%, 용적율 10.38%	
1층	628	제설제, 도로유지보수자재 창고, 화장실	
2층	229	사무실, 휴게실, 샤워실, 화장실, 탕비실, 보일러실	
옥상	22	계단실	

- 사업의 기간 : 2019. 3. ~ 2019. 12.
- 총 사업비 : 1,566백만원(공사비 1,500, 설계비 66)

4. 재원별 예산계획 및 확보방안

○ 소요예산 : 1,566백만원(구비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산 출 기 초	계
총 계		공사비 + 용역비	1,566
공 사 비		$879m^2 \times 1,706\text{천원}/m^2$	1,500
용역비	실시설계	$15\text{억원} \times 3.41\% \times 1.3$	66

○ 예산확보 방안 : 기 예산확보(공영주차장 건설 관련)

5. 추진근거

○ 주차장법 제12조(노외주차장의 설치 등)

○ 구청장방침 : 도로확장 및 주차장건설 추진계획(2015.02.06)

○ 구청장방침 : 공사 저축시설 이전 및 실내체육관 건립계획(2019.2.18)

6. 향후 추진계획

○ 2019. 4. : 기본 및 실시설계

○ 2019. 4. ~ 9. : 발주 및 준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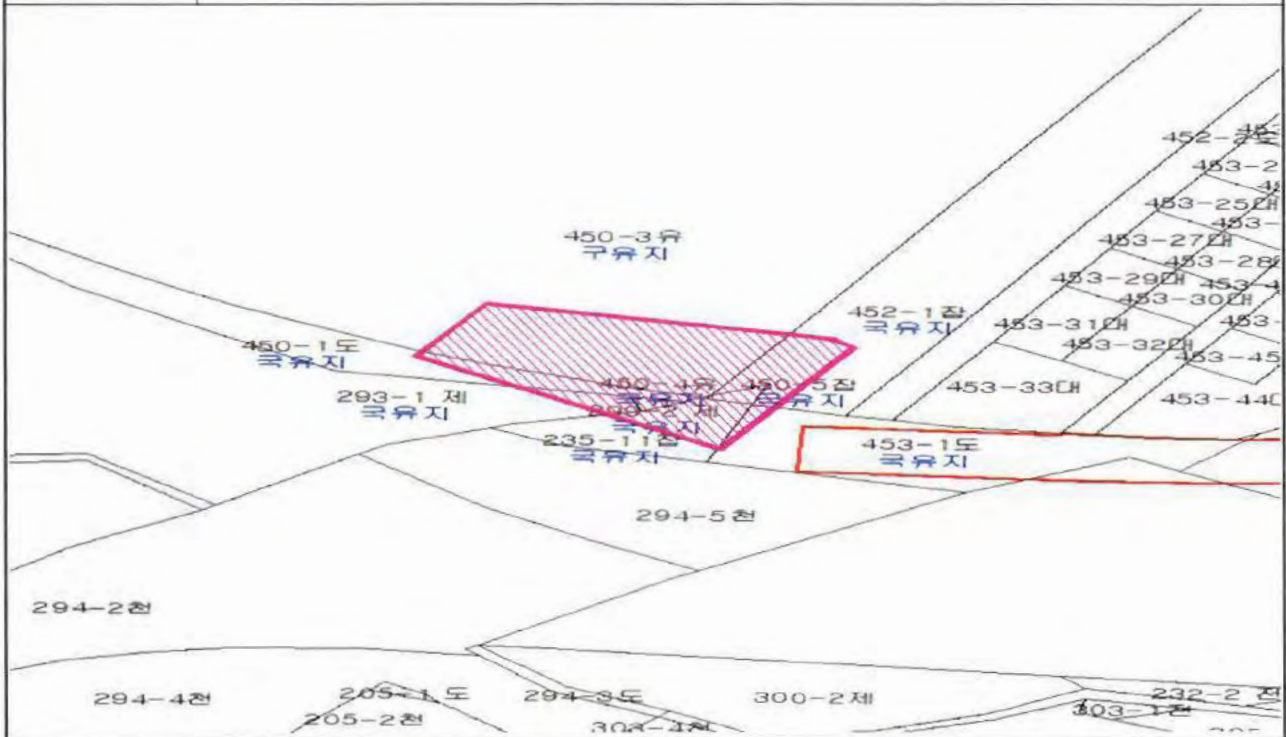
붙 임 :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

위 치 도



위치도 설명

토목과 제설제 창고 : 마포구민 체육센터 옆 쉼터



제설제 창고 : 망원동 450-3 등 9필지

토목과 제설제 신축참고 현장사진



사진설명

토목과 제설제 신축 참고부지 항공사진



사진설명

토목과 제설제 신축 참고부지 전경

2019년 구유재산 관리계획

201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[11-1]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 고
	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
취 득	계				2	1,875	4,170,000	2	1,875	4,170,000	
	1. 매 입										
	2. 교환으로 취득										
	3. 기타 취 득				2	1,875	4,170,000	2	1,875	4,170,000	
처 분	계										
	4. 매 각										
	5. 양 여										
	6. 교환으로 처분										

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11-2)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 득 사 유	비고
	지목	소 재 지 수 량				
1	도,제	망원동460-5 망원동227-2	건물연면적:996	2,604,000	공사완료 : 2019.12월 (2019.7.~12.)	대체신축 공영주차장 건설로 인해 저축되는 실내체육관을 철거 후 대체 신축
2	유,도 잡,제	망원동450-3등 9필지	건물연면적:879	1,566,000	공사완료 : 2019. 9월 (2019.4.~9.)	대체신축 제설제 보관의 안정성, 상·하차 용이, 작업자의 안전 및 능률 제고 ※ 공영주차장건설로 철거 되는 미화원대기실, 불법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보관창고를 현 토목과 창고로 이전 사용하고 토목과 창고 대체신축